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10/ 20 통권 154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잘 살아보세'와 '바로 살아보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과 최종세금들

CFO·외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1.2%의 이자율을 적용함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연

-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탐사비는 자산이 아니고, 지출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에 반영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부모가 부동산을 선 증여 후 양도할까? 먼저 양도 후 증여할까의 세금 비교 >

- 부모 부동산 2건 중 1건 : 취득원가 10억원, 기준시가 21억원, 실제 양도가 30억원(10년 보유)

개념 구분	선증여(부동산) 후 양도	선양도 후증여(현금)
증여가액	① 자녀에 부동산 선증여 세금 21억원 ÷ 2인 = 10.5억원	② 자녀의 현금 후증여(전액)세금 · 30억 - 양도세 7.2억원 = 22.8억원
과세금액	· 증여세 과세금액 : 10.5 - 5천만 = 10억	· 1인당 22.8억 ÷ 2인 = 11.4억원 증여
증여세금	· 1억 × 10% + 4억 × 20% + 5억 × 30% = 2.4억원 × 2인 = 4.8억원	· 과세금액 = 11.4억원 - 0.5억 = 10.9억원
취득세	21억원 × 3.5% × 1.2배 = <u>0.88억</u> 총 세금합 5.68억	· 10억원까지 2.4억원 + 0.9억원 × 40% = 2.76억원 × 2인 = <u>5.52억원</u>
양도소득	② 수증받은 자녀의 양도세 30억 - 21억 - 5.68억 = 3.32억 ÷ 2인 = 1.66억	① 부모의 선양도세금 30억 - 10억 - 4억(장기보유공제 20억 × 10년 × 2%) = 16억의 양도세
최종양도세금	1.66억원의 양도세 : 3,760만원 + 1.5억 초과 1600만원 × 38% = 4368만원 × 2인 × 1.1 = 9610만원	3.846억 + 6억 × 45% = 6,546 × 1.1 = <u>7.2억원</u>
총 세금합계	6.641억원	12.72억원 (= 5.52 + 7.2)
세금차이 이유	증여세율은 10억까지도 30% 이내	양도세율은 1억 초과부터 38.5%
재산권제한관계	부모의 재산통제권 상실	부모가 자금통제권 확보
현실적 적용	재산이 많은 경우 선택	재산이 적은 경우 등에 선호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1 호 / 주간 42호

2021. 10. 20.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모가 부동산을 선 증여 후 양도할까? 먼저 양도 후 증여할까의 세금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과 최종세금들	2
C E O 에 세 이	'잘 살아보세'와 '바로 살아보세'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의제매입업체 관련	5
	- 상품 채고 대어 관련 문의	6
	- 부가세신고 문의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 Premium preflight cost - 매출 처리 문의 사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시에는 1.2%의 이자율을 적용함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 부과	9
	- ISA계좌 운용내용 변경 전·후 비교	10
직 장 인 Survival	평판관리와 위기관리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비영리 법인이 소득취주자에게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소득-477, 2021.02.01)	13
	-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114, 2021.03.08)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영세사업자 162만명 고지 제외	15
마 케 팅 Tax consulting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탐사비는 자산이 아니고, 지출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에 반영함	13
세 무 정 보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15
	-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27
경 영 정 보	-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36
	-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5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과 최종세금들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항목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 자녀 증여 후 양도	특수관계자 경유 후 5년내 양도
양도소득 납세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양도가액	실제거래가(최종)	실제거래가(최종)	최종거래가
취득원가	본인의 당초 실제원가	배우자, 자녀 증여신고 금액 (최하는 매매사례가, 감정가 등)	본인의 당초 실제원가
취득세와 자본적 지출	가산함	가산함	가산함
증여세 상당액	없음	가산됨	가산안됨
계산되는 세금	본인의 양도세	배우자, 자녀의 양도세	본인의 양도세
최종세금 합	한건(본인의 양도세)	① 배우자, 자녀의 증여세 ⊕ ② 배우자, 자녀의 양도세	① 특수관계자 증여세 + ② 특수관계자 양도세 합계와, 본인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확정됨
추가 문제점	양도 후 잔액 (양도액 - 양도세)의 증여문제가 남음	문제 없음	양도잔액 귀속문제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초 소유자 본인 소유임

‘잘 살아보세’와 ‘바로 살아보세’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KBS 일요스페셜에서 방송된 아름다운 '엘렌이야기'가 있었다.

엘렌은 한국에서 버려진 고아 출신으로 시각장애인처럼 거의 보이지 않는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네살때 역시 시각장애인부부인 자상한 니콜스부부에게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다. 니콜스부부는 엘렌 외에도 시각장애인과 정신박약아인 한국출신 고아 여러 남매를 사랑으로 드라마같이 키우고 있었다. 엘렌은 버려졌던 아픔을 극복하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리고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왜 버려졌으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누구인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코자 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바른 인생설계와 건강한 꿈을 꾸고 있어 진한 감동으로 가슴을 울렸다. 필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존재와 소유'는 에리히 프롬이 던진 철학적 화두였다. 그는 사람을 존재형 인간(Being-Mode Human)과 소유형 인간(Having-Mode Human)으로 구분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의 가치는 실존에 있지 얼마나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제의 노예생활, 6.25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 한국인은 극빈을 면할 수 없었다. 모든 한국인은 가난이 웬수였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배불리 먹고, 입고, 따뜻하고 싶었다. 6.25 이후 급격히 가까워진 주한 미군이란 창문을 통해 본 초코렛, 과자와 빵을 먹고 싶었고, 털 외투를 입고 싶었으며, TV와 냉장고 그리고 침대생활이 소원이었다.

바로 그때 5.16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등장했다. 정통성 부재를 캄플라지해야 했다. '군부, 관료, 재벌'의 국가주도 압축성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권정치와 황제오너들의 돈벌이가 극성을 떨었다.

모든 한국인들도 소유에 대한 욕망이란 불길에 기름 붓듯, 전쟁을 치르듯 '잘 살아보세'를 향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질주했다. 그 덕에 한국인들은 TV,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아파트, 침대 그리고 드디어 마이카를 '소유'하게 됐다. 바캉스와 해외여행도 하게 됐다.

드디어 소위 '한강의 기적'을 온 세상에 알리는 88올림픽까지 개최하는 국가반열에 올랐다. 세계가 놀랐다. 그러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한 '한강의 기적'이었다. 속이 성할 리가 없다. 편법, 꼼수, 탈세, 빚더미경영, 정경합작과 유착, 흑막, 눈속임, 허세, 거짓, 부패, 거품 등이 잉태하고 발호했다. 정결과 근검과 성실과 책임은 촌스러운 언어로 전락했다. 결국 '잘 살아보세'는 '나만 무조건 잘 살아보세'로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다.

모두가 모두에게 적이며 타도대상이 되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잃게 되었다.

모두가 천민화 되었다.

그러다가 무리하게 부푼 풍선이 바늘에 터지듯 IMF를 맞았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국가의 경제 효율을 높이는 과제인 듯 했으나 경제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온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긴 했지만 반복되는 문제일 것이다. 기업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기업환경개선이 함께 해야한다. 그것은 사회문제이며 철학의 문제다. '잘 살아보세' 즉 '나만 무조건 잘 살아보세'에서 '바로 살아보세'라는 사고의 전환의 문제다.

새롭고 진정한 풍요와 번영의 삶.

엘렌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치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 그것이 곧 '바로 살아보세'가 아니겠는가.

의제매입 업체 관련

Q 의제 매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복과 같은 해산물을 구매한 업체의 분류가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으로 되어있는데 의제 매입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면세적용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자의 업체
분류에 의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재고 대여 관련 문의

Q 당사는 A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B, C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 물량을 맞추지 못해 입고가 지연되었고, 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B사에 2020년 매출했던 재고를 대여하여 C사에 매출하였습니다. (21년 4월)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 입고)를 하지 않고,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 출고)만 하여
해당 상품은 재고가 마이너스 나는 상황입니다.

B사로부터 대여받은 상품은 추후 A사에서 입고가 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1. 대여받고, 반납 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대여: 상품 / 외상매입금

반납: 외상매입금 / 상품

2. 대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대여받을 때 상품/차입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가 아니므로 매출매입에 세금계산서 주고받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세신고 문의

- Q**
1. 소프트웨어같은 무형자산 취득한경우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2. 2분기 매출시 현금영수증발급을 누락하였는데, 1기확정신고시 건별로 부가세신고 반영하고 3분기에 현금영수증발급, 2기에정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매출 미반영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1. 무형자산도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므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현금매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3분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기 확정신고시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2기에정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하면 해당 사실을 알려주면됩니다.

Premium preflight cost - 매출 처리 문의 사항

- Q**
- 아래 2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Premium preflight cost 중 일부를 고객사가 지급해주기로 협의 하였고 이것이 6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포함 되어 매출 세금계 산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 신고를 하면 될지 또는 운송비로 인식하여 수입금액제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문 회계 처리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출처리를 해야 할지 운송비 차감 처리를 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 A**
1. 귀사가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이 지급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례금이므로 매출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일종의 사례금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1.2%의 이자율을 적용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다가 현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되어 1.2%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1.2%의 이자율을 반영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처리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이유

부동산(주택은 제외) 등을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등의 이자상당액을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매월의 임대료 외에 전세금·보증금 등은 원칙적으로 매출이 아니라 계약 종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할 부채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월임대료를 받는 경우와 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형평이 침해되기 때문에 보증금 등의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간주임대료의 세무처리 방법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바,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2021년부터는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산식

$$= \text{임대보증금} \times \text{과세대상 기간일수} \times \frac{\text{정기예금이자율(2021년은 1.2\%)}}{365(\text{윤년의 경우 366})}$$

하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중인 경우)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 부가46015-905, 1998.05.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또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 할 수 있으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text{공급가액} = \frac{\text{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times \text{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times \text{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text{윤년의 경우에는 366})}$$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사무실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 ① 월임대료: 3백만원 × 3개월 = 9,000,000원
-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2021.7.1-2021.9.30)
= 3억원 × 1.2% × (92일/365일) = 907,397
-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월임대료(①) + 간주임대료(②)
= 9,000,000 + 907,397 = 9,907,397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법인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 부과

과세표준	상속세 부과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20% -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 50% - 4억6000만원

회

국외전출세 대상 대주주 요건

구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대상	출국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인 구분</th> <th>지분율</th> <th>시가총액</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 이상</td> <td>10억원 이상</td> </tr> <tr> <td>코스닥</td> <td>2% 이상</td> <td>10억원 이상</td> </tr> <tr> <td>코넥스</td> <td>4% 이상</td> <td>1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법인 구분	지분율	시가총액	일반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10억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10억원 이상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구분	지분율	시가총액												
일반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10억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10억원 이상												



ISA계좌 운용내용 변경 전 · 후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형	신탁형 :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일임형 : 전문가에 편입상품 교체·위임 가능	신탁형 : 좌동 일임형 : 좌동 투자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중개업자의 위탁계좌 형태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가능하나 예·적금 편입은 불가
납입한도	- 연간 :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 납입한도 : 이월 적립 불가	- 연간 : 좌동 - 납입한도 : 이월 적립 가능 - 의무가입기간 종료 후 해지·재가입시 납입한도 재생성
세제혜택	- 일반형 : 200만원까지 - 서민·농어민형 : 400만원까지 -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	- 일반형 : 좌동 - 서민·농어민형 : 좌동 - 분리과세 : 좌동
연금계좌 이체	없음	- 의무가입기간 종료시 ISA만기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 가능,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7.25.	법인사업자
		1.1. ~ 6.30.	7.1. ~ 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
		7.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



평판관리와 위기관리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

- 모니터링하라. 분석하라. 예측하라.
- 대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라.
- 필요 시 모든 부정확한 정보들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라.
- 가능한 프레임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대화하라.
- 핵심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화하라.
- 항상 업데이트된 상태를 유지하라.
- 위기 시에는 회사로부터 나가는 모든 메시지를 통제하라.
- 소셜 퍼블릭을 이해하라. 그리고 친해져라.
- 소셜 퍼블릭 하나하나를 존중하라.
- 인간적이 되라.
- 공감하면서 들어라.
- 평소 소셜 퍼블릭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성장시켜라.
- 부정적인 소셜 퍼블릭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주장에 익숙해지라.
- 침묵하는 소셜 퍼블릭들을 감안하고 대화하라.
- 준비하고 개입하라(또는 준비하고 개입하는 타이밍을 노려라)
- 기업의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로 하여금 통합적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관리하라.
- 대화의 전장들을 가능한 축소하라.
- 객관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대화하라.
- 욕을 들어야 할 때는 쿨하게 들어라.
- 어떤 것에도 단어하거나 확신하지 말라.
- 가능한 짧은 메시지로 대응하라.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룸 등 위기관리 플랫폼에서 하라.
- 소셜미디어 운영자들에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제공하라.
- 위기대응 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 위기 시 직원들에게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빨리 공유하라.
- 항상 소송에 대비하라.
- 모든 것을 빨리하라.

최신 판례 예규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소득-477, 2021.02.01

질 의

- 질의법인은 00000법 제00조의0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00지역 00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함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소득하위자들에게 대가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
 - 지역거주 00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을 지급함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소득하위자에 지급한 지원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콘텐츠제작지원금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법인-4041, 2021.03.08

질 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

질 의

- '16.5.31. 부산시 연제구 소재 주택분양계약 체결
 - *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
- '18.12.31. 분양계약 잔금 지급
 - * 부산시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질의

- 주택 취득일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

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 신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주택법」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탐사비는 자산이 아니고, 지출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에 반영함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114, 2021.03.08

질 의

- A법인은 2011.9.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파트너사와 체결한 "대한민국 해저개발지역에서의 석유 탐사 및 생산에 관한 조광계약서"에 따라 남부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을 위하여 A법인의 자체 자금과 국가로부터 에너지특별용자를 받아 탐사사업비로 지출하였는바
 - 에너지특별용자의 주요 대출조건은 성공 시 용자 원리금을 상환하고 실패할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면승인을 득해야 함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 참여 이후 탐사활동이

수행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탐사를 위해 지출한 총 800억원(자체자금 482억원, 에너지특별용자 318억원)을 탐사평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 A법인은 탐사권 취득 이후 2017년까지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경제성 미달로 탐사사업 철수 및 탐사권 반납신청을 하였으며
 - 2017.12.29.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탐사권 소멸통보를 받았으며 탐사권 소멸통보를 받은 시점에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무형자산 손상차손(영업외비용)을 인식하였으며
 - 에너지특별용자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승인 시 차입금과 무형자산을 상계처리하였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갑설) 탐사사업비 지출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즉시 손금산입 대상임(을설) 탐사사업비 지출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상각과정을 통하여 손금산입

회 신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른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 영세사업자 162만명 고지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5만명 감소했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를 합친 총 81만명으로 올해 1월~6월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는 별도 고지서없이 홈택스에서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29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하고, 홈택스 신고 초기화면을 개편해 납세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와 어려운 사업자는 지원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디지털세, 세수에 플러스... 환율, 필요시 안정화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필라1의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방지장치에 의해 국내에서는 그만큼 공제된다고 "기업의 부담은 조세중립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

또 중간투입재의 최종매출액과 연관성, 매출액의 국가별 배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이프 하버' 등 남은 쟁점에 따라 과세 규모가 증감한다며 "앞으로 1년간 세부적 기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환율 상황이 우려됐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국세청, 2021. 10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62만 명)합니다.
 - ①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26만 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36만 명)2)가 대상으로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중기부 수보)
 -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도소매 등 15억 원, 제조 · 음식 등 7.5억 원, 서비스 등 5억 원)
 -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사전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 ('20년 2기 예정) 59종, 16만 명 → ('21년 2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 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년 2기 예정신고(101만 명) 보다 약 45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64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 1. 1.~'21.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10. 25.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I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62만 명)
 - * '21년 제10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9. 28.)

○ (지원 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②영세 자영업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26만 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36만 명)

*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7~12월 실적'을 '22.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참고 5)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추가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 10. 29.(금) 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1. 11. 9.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3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 6)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III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 ('20년 2기 예정) 59종, 16만 명 → ('21년 2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 업종별·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입료, 관세사 대행용역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법인결산서 상 임대료 계상액 매출누락 • (서비스) 자연장지 운영(수목장) 관련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 (건설업) 오피스텔 주거 공급분 신고 유의사항,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유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거래) 배달·숙박 등 앱(app) 거래를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비대면 서비스) SNS마켓 사업자, 식료품 새벽배송 관련 가공식품제조업 • (지역화폐) 지역화폐 결제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매출자료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8)
 -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홈택스 개선)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초기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 * 화면·글자 크기 확대, 탭방식 메뉴 구조, 신고특성을 고려한 바로가기 등
- (세무알리미 안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여부'와 '예정신고의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나의 세무 알리미」를 통해 세무 일정을 안내합니다.
- (대화형 신고서비스 도입) 조기환급(시설투자에 한함) 신고서 작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세법용어를 사용하여 「묻고 답하는 방식」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합니다.('21.9월부터)
 - * (경로)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화면 > 조기환급신고(월별, 대화형 방식) 선택



V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추진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 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진현황 |

분류	주요 확인유형(예시)	내용
매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app) 거래(배달·숙박) 매출누락 ○ 기타 현금매출 등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대행 사전안내 자료 반영 여부 ⇒ 인테리어, 전기업자, 농기계대리점 등
매입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 오피스텔 등 면세전용 협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 의제매입세액 부당 공제 ○ 업무무관 매입세액 부당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제 대상 차량 매입자 추출 ⇒ 오피스텔 등 거주 신고 확인 자료 ⇒ 과·면세 매출에 따른 불공제 비율 저조 ⇒ 공제한도 초과 사업자 추출 ⇒ 캠핑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매입
공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부적정 ○ 부가가치세 부당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자 추출 ⇒ 감면배제업종(임대) 사업자 감면 신청

- ※ 단,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소기업,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참고 1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 ~6. 30.	예정신고	1. 1. ~3. 31.	4. 1.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 1. ~6. 30.	7. 1. ~7. 25.	법인사업자
		1. 1. ~6. 30.	7. 1. ~7. 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 1. ~12. 31.	예정신고	7. 1. ~9. 30.	10. 1.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 1. ~12. 31.	다음해 1. 1. ~1. 25.	법인사업자
		7. 1. ~12. 31.	다음해 1. 1. ~1. 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최소

* 휴업 등으로 '21년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2021. 10. 25. (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p>홈택스 (PC, 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p>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p>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p>세무서 (무인수납창 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1. 10. 14.	
2		신용카드 매출	21. 10. 14.	
3		현금영수증 매출	21. 10. 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1. 10. 15.	
5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1. 10. 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1. 10. 14.	
7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1. 10. 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1. 10. 14.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1. 10. 1.	
10		현금영수증 매입	21. 10. 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1. 10. 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1. 10. 1.	
13		재고납부세액	-	확정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 10. 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1. 10. 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 10. 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1. 10. 11.	
2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 10. 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기타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10. 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10. 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1. 10. 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1. 10. 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참고 4 -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납세자 본인]

※ (경로) 홈택스 IDPW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세무대리인]

※ (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접속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세 수입납세자 예정고지 조회' 화면에서 전체 수입납세자 일괄 조회 가능

참고 5 -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 4. 5.	'21. 12. 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 5. 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 4. 5.	'22. 4. 4.	(전북) 군산시	
	'18. 5. 29	'23. 5. 28. (2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 09. 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 10. 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 04. 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 09. 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 10. 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 10. 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육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 03. 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참고 6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 자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한국감정원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오피스텔의 주거용 공급분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안내
전문서비스업	○ 관세사의 대행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대리인 불복 수입료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 현황자료
제조업	○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제조업	○ 철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배달업을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자연장지(수목림 등) 과세거래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수의업 현금매출 관련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SNS 마켓 등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점검 실적 자료
도·소매업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 분석 자료 등 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한 수수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제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공통	○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공통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내역
공통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 내역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수출통관 및 외환수취자료 안내
공통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참고 7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 기획재정부, 2021. 10

-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
 -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 참여하지 않은 4개국 :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 지난 7.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 결정, 최종 합의문 채택
 -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

[7월 합의안 대비 새롭게 결정된 주요 내용]

< 필라 1 >

- ①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
 - (7월 합의) 배분비율 20~30% → (10월) 25%
- ② 분쟁해결 절차
 - (7월 합의)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10월)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하여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선택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함
 - * 상호합의 등 분쟁 대응 경험 및 역량이 낮은 국가들에 한하여 복잡한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서, ①BEPS Action 14(상호합의) 동료평가상 유예(deferral)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②상호합의 분쟁 건수가 없거나 적은 국가에 한하여 적용
- ③ 국가별 단독과세
 - (7월 합의) 필라1 합의 시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금지 검토
 - (10월)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준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필라 2 >

① 글로벌 최저한세율

- (7월 합의) 최소 15% 이상 → (10월) 15%

② 실질기반 적용제외*

* 실질활동지표인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7월 합의)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최소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5년 동안은 최소 7.5%를 공제

→ (10월)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경과기간이 종료되면 공제비율은 2가지 요소 모두에 대해 5%로 이어지는 구조

③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여부

*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 행사

** ①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②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 (7월 합의) 해외진출 초기단계 기업 적용제외 가능성 검토

→ (10월)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5년 간** 적용 제외

* ① 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 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 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② 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④ 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

*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7월 합의) 7.5%~9% → (10월) 9%

⑤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

- (7월 합의) 본 규칙의 유예 가능성 검토

→ (10월) 2024년부터 발효 (1년 유예)



[시행 계획의 발표]

- 최종 합의문에 시행 계획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23년 필라1·2 시행을 위한 향후 잔여 작업방식 및 시한을 확정
 - (필라1) '22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 '22년 중순 서명식 후 국내 비준 및 입법하여 '23년 발효
 - (필라2) '21.11월 모델규정 마련, '22년 국내법 개정하여 '23년 시행

[이번 합의의 의미 및 성과]

- ①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
 - * <주요 논의경과>
 - (18.12) 필라 1·2의 개념 첫 확정(OECD IF)
 - (20.10) 제10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 (21.7) 제12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 합의안 발표
 - (21.10) 제13차 IF 총회, 필라 1·2 최종 합의문 발표
 -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 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짐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② 필라 1·2을 '23년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써 각국에서의 실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한 모멘텀 확보
- ③ 국가간 이견이 커 7월 합의를 결정되지 못하고 10월로 유보되었던 아래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결론 도출

< 필라1 관련 >

- ① 과세권을 배분할 국가와 배분받을 국가 간 합의를 이루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소재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 확정
 - * Amount A = 매출액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 × 25%
 - 기업의 초과이익 중 1/4은 시장이 기여하여 창출된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없이도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게 됨
 -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므로 논의상 30%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안인 25%로 결정
- ② Amount A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례 부여의 범위도 구체화됨으로써 기업 및 과세당국의 분쟁 대응 리스크 축소 효과
- ③ 또한, 그간 통상분쟁 등을 유발하며 기업활동의 리스크를 높였던 국별 단독과세(DST 등)가

필라1 도입과 더불어 철폐·도입금지될 수 있도록 합의 달성

< 필라2 관련 >

- ①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그간 논의되었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되었고, 조세 회피 관련성이 낮은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난 7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냄
- ②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에는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여, 해외진출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우려를 완화
 - 또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를 1년 유예함으로써,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향후 일정]

- 금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10.13, 워싱턴 D.C.)에 보고될 예정(홍남기 부총리 참석)이며, 이후 G20 정상회의(10.30-31, 로마)에서 추진될 예정
 - G20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①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②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
 - 그간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되어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계획
- `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

< 향후 일정 >



○ 필라1은 '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마련 → '22년 중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 완료 → `23년 발효

*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할 의무

○ 필라2는 올해 11월 중 모델규정 마련 → '23년 중 국내 법제화 → '23년 시행

-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

참고 -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 주요내용

※ 파란색 글씨는 지난 7월 합의안 대비 새롭게 결정된 내용

1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Pillar 1)

[기본 개념]

- (개요)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 (과세이익 결정) “①이익률 기준→②배분율→③배분지표”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개별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될 과세이익 결정·배분

- * ① 초과이익 = 과세표준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10%))
- ② 전체 시장소재국 배분대상 과세소득 = 초과이익 × 배분율 25%
- ③ 개별 시장소재국 배분 과세소득 = 전체 배분대상 과세소득 × 배분지표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은 이월
-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함
-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 (Amount A)를 제한(cap)함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분쟁해결 절차) Amount A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됨
 - 분쟁대응역량이 낮은(BEPS action 14상 유예 판정을 받고, 상호합의 건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고, 주기적 재심사 진행
- (Amount B*) '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 *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1 관련 절차 일괄수행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2년 서명한 후, '23년 발효 목표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Pillar 2)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며, 이러한 제외는 5년간** 적용
 -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 ②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기본 개념]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소득산업규칙]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비용공제부인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필라2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 (최저한세율) 15%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필라2 과세표준에서 공제
 - *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최소기준 적용제외) 한 관할국에서 ①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②이익 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관할국에서 적용제외
-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톤세 제도를 적용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적용제외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 (원천지국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9%

□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 ①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이행) `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3년부터 시행 목표

○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4년부터 시행 (☞ 1년 유예)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8일 (금)	10월 12일 (화)	10월 13일 (수)	10월 14일 (목)
미 달 러 (USD)	1190.30	1193.40	1199.10	1195.00
일 본 엔 (JPY)	1066.05	1052.38	1055.82	1055.14
영 국 파 운 드 (GBP)	1620.77	1621.47	1629.04	1633.15
캐 나 다 달 러 (CAD)	948.33	955.91	961.51	960.57
홍 콩 달 러 (HKD)	152.90	153.42	154.08	153.61
위 안 화 (CNH)	184.38	185.00	185.74	185.12
유 로 화 (EUR)	1375.45	1378.20	1382.86	1385.96
호 주 달 러 (AUD)	870.53	876.85	880.92	881.97
싱 가 폴 달 러 (SGD)	876.32	880.22	883.61	884.3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52	286.19	287.86	287.26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 금융위원회, 2021. 10

I 검토배경

-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
 - * 투자자 A 0.3주, B 0.4주, C 0.2주 매수주문시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제출
 - 주식은 사원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 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은 불가(주식불가분의 원칙)
 - 온주를 전제로 한 현행 법률체계 및 매매·결제 인프라* 내에서 소수단위를 모아서 최소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법만 가능
 - * 美·英 등 해외에서도 매매 및 예탁결제 인프라는 1주 단위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정규거래시장에서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불가

 - '17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 증가
 - '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2개 증권사가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중
 -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관심확대 추세와 맞물리면서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실적이 예상보다 높았음*
 - * '21.6월말 누적거래현황 : 신금투(14만명, 2.7억달러), 한투(51만명, 7.5억달러)

 - 반면,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칙과 증권 인프라와의 충돌문제로 혁신금융서비스 미지정
 - 금융위는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방침을 발표('20.8월)
 - ※ 국회에서도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제시
- ➔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II 제도마련시 주요 고려사항

- ① 현행 증권거래 제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소수단위 거래방식 에서도 투자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현행 증권예탁제도(전자증권제도)는 온주의 계좌부 기재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 * 투자자·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311①)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전자증권법 §35①)
 - 계좌부에 소수단위로 임의로 분할기재한다고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권리보호에 한계*
 - * (예) 증권사 파산시 투자자가 그 소수단위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불명확

- ② 상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주로부터 복수주주가 파생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 상법상 허용(§333)되는 주식의 공동소유는 소수지분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표창하기가 어렵고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존재하는 바 대량의 표준화된 거래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지만(상법 §333②),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중 누가 권리를 행사해야하는지 결정곤란

- ③ 증권의 매매, 청산·결제, 전자등록(예탁) 등 기존 증권 인프라와 업무절차를 소수단위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은 편익 대비 비용이 과도
 -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최소 매매단위를 1주로 정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결제(settlement) 인프라도 1주 단위로 설계
 - 기존 업무절차*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 차별화된 개선방안 마련
 - * 해외주식거래는 여러 국가의 다수 금융중개기관(외국보관기관 등)이 매매결제 과정에 추가적으로 개입하여 증권을 보유하는 구조 ➡ [별첨1] 참고(9-10p)

III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본방안

- ◆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계좌부 기재로 투자자가 외국기업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지분을 계좌부에 직접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 해외주식 주문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化하여 매매주문 실행*
 -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하여 현지(미국 등)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서 당해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
 - 증권사는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
 - ※ 증권사는 투자자계좌부에 포함된 자기분 소수단위 주식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
 -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해당 주식을 온주단위로 총량관리
 - 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전용계좌(투자자분)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고객 재산·자기재산 총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해외 주요국도 온주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외국보관기관을 통한 예탁결제원의 결제·보관·권리행사는 온주단위로 처리
 -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는 예탁결제원이 전부 수령 후 투자자별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
 -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권 행사여부·방법 등은 투자자와 증권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

IV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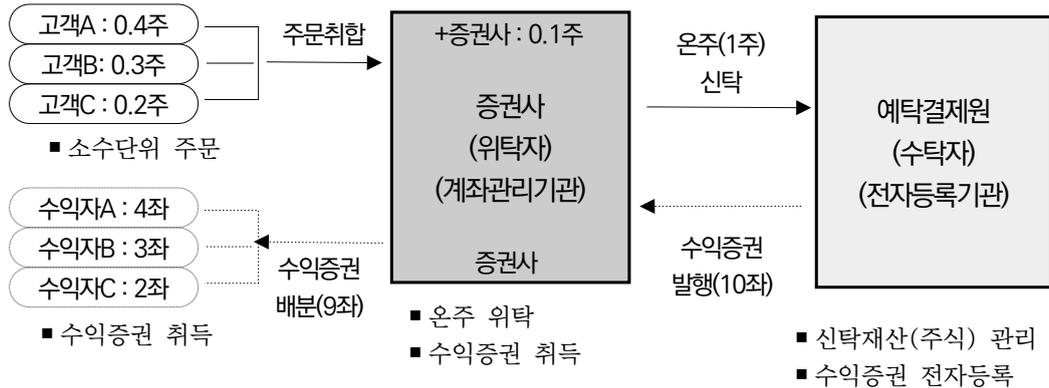
◆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

1 권리관계

- 기존 법률과 인프라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수단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탁의 수익권으로 전환
 - 증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고, 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 발행*
 - *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法 §110①), 비금전(주식)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특례 인정필요
-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증권사(위탁자), 예탁결제원(수탁자), 고객·증권사(수익자)로 구성
 - (위탁자)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온주를 취득하고,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주식)으로 이전

- (수탁자)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인 온주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재산을 관리(주주권리 행사)
 - (수익자) 고객과 증권사는 소수단위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수익권*)를 보유
- *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 보유

〈 신탁제도를 이용한 소수단위 주식거래 업무구조 〉



2 거래흐름

- ①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제출
 - 취합된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이 온주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증권사가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호가제출
 - 증권사의 "주문취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반 증권거래와 같은 실시간 거래는 현실점에서 어렵고,
 - 주문취합의 주기는(1시간 단위 등) 전산시스템 수용능력, 영업전략 등에 따라 증권사가 스스로 설정
 - 증권사는 매수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설정 청구
- ② 예탁결제원은 수탁자로서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
 -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는 소수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
 - * 소수단위 주식 매수(매도)에 따라 신탁재산의 증가(감소)가 이루어짐
 - 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사에게 발행하고(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 증권사는 수익증권을 다시 고객계좌부(소수단위 투자자분)에 계좌간 대체하여 전자등록



- ③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소유자인 수익자로서 권리행사
 - 투자자는 매매시점(T일)이 아닌 결제시점(T+2일)에 수익증권 취득
 - 투자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전자등록계좌부 내에서만 변경·말소
 - ※ 매도는 매수 거래흐름의 반대의 과정을 거쳐 수행

3 투자자 권리행사

- 상법에 따라 주식을 가진 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
 - 주주는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익권(自益權)과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익권(共益權)을 가짐
 - ※ 자익권으로는 신주인수권(§ 418), 이익배당청구권(§ 462), 잔여재산분배청구권(§ 538) 등이,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366), 의결권(§ 369) 등이 있음
 - 소수단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수익증권 보유자이므로 법률적인 주주권을 갖지는 않음*
 - * 법률적으로는 신탁재산(주식)의 소유권을 가진 예탁결제원이 주주권 보유
- 다만,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사실상 주식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탁결제원이 신탁재산(주식)의 주주권 행사
 - 자익권에 따른 배당금,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수익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
 - * 기타 자익권의 행사방법은 일반적인 온주에 대한 처리방식을 준용
 -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法 § 112①)
 - * (상법 제369조제1항)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소수단위 주식(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 * (예) 소수단위 주식을 0.6주, 0.8주, 0.7주 매수하여 총 2.1주를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2주에 대해서는 온주단위로 전환한 후 의결권 행사가능
 - 그 외 공익권 중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소수주주권)는 해당 권리의 성질상 인정하기 어려움
 - * (예) 대표소송 제기권 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은 3%로 규정
- 투자자분 수익증권은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증권사 자기재산분과 구분하여 등록·관리

-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수익증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투자자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가능

V 기대효과

-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 *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액면분할(상법 §329의2, §434)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 ⇨ 고가주식에 대한 소액투자가능
 -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가능*
 - *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천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 * (예) 금액단위의 주식매매 서비스 제공,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및 거래 툴(tool) 제공 등
- 예탁결제원은 신탁방식의 예탁제도를 시험·운영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가
 - 현재의 예탁제도(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원이 투자자의 증권을 혼합보관(혼장임치)하고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구조
 - 반면, 신탁방식은 신탁의 법리에 따라 투자자와 예탁결제원 간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며*
 - * (예) KDR(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신탁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수탁자로서 KDR소유자에 대해 각종 책임을 부담하므로 투자자 보호 강화
 - 새로운 종류의 재산을 수탁받아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보유토록 하는 등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VI 향후계획

-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수단위 매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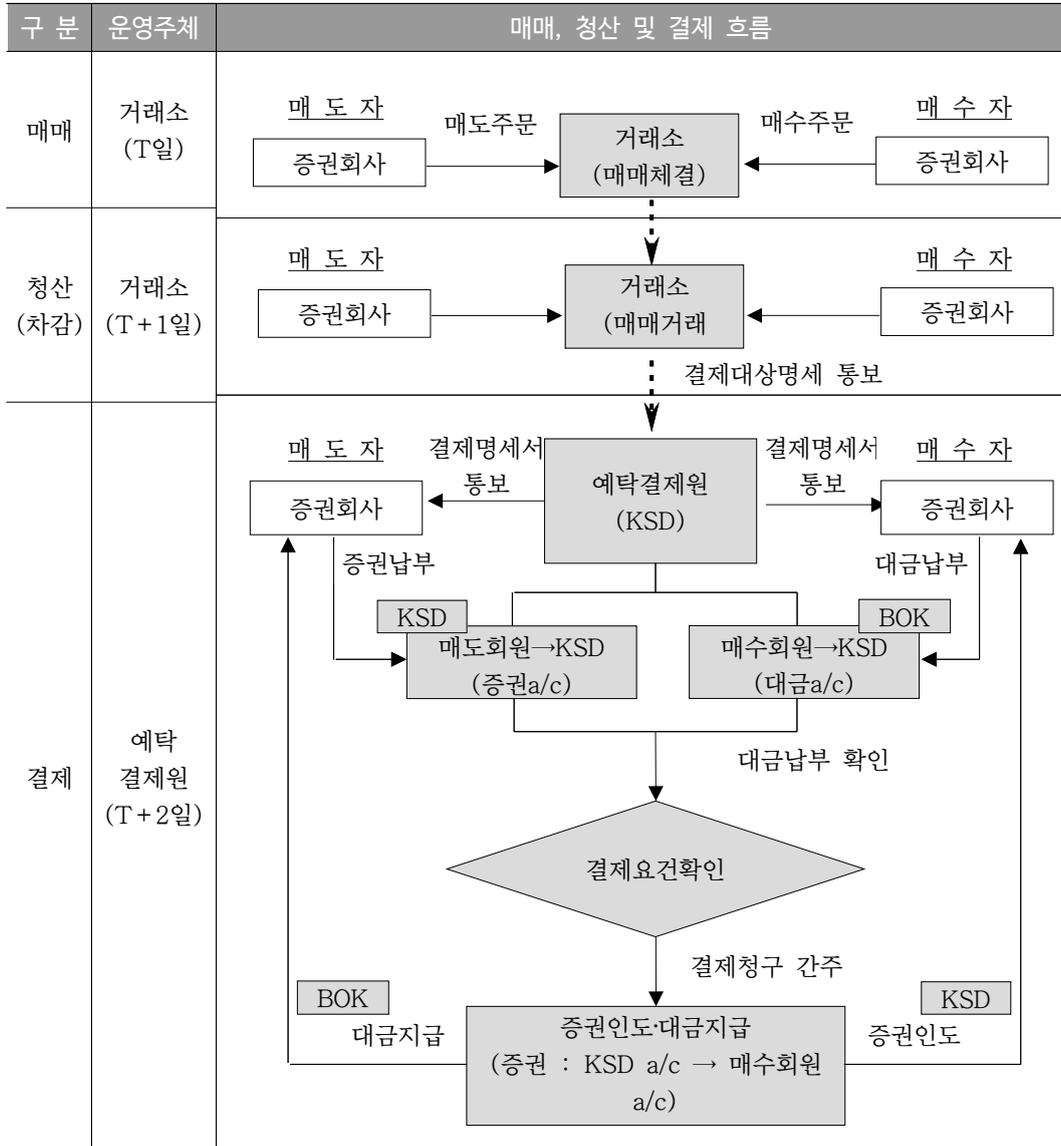
- 예탁결제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증권사와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 ('21.10~11월 예정)
-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 및 구분매매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규제에 대한 특례적용 필요
 - 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전용계좌는 "온주 단위"로 관리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한 구분예탁의무(法 § 309③) 예외인정
 - 증권사가 해외주식을 증개할 경우, 자기재산 매매계좌와 분리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의무(승 § 184②)에 대한 예외인정
- 국내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신탁방식의 예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특례 적용필요
 - 예탁결제원에 대해 소수단위 주식거래와 관련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탁업 영위 허용
 - 금전신탁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수익증권 발행을(法 § 110①)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위한 비금전(주식)신탁에도 허용
- 투자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세부 제도설계와 전산구축이 마무리 된 이후에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서비스 개시 예정시기 : (해외) '21년중, (국내) '22년 3분기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일정기간 운영한 이후 그 성과 등을 보아가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항구적 제도화 추진검토

별첨 1 - 국내의 주식매매·결제 과정

< 국내 >

- ① T일 : 매매체결 및 매매거래확인(거래소)
- ② T+1일 : 차감 후 결제대상명세 작성(거래소)
 - 결제대상명세 작성 후 예탁결제원에 통보(18:00 이후)
- ③ T+1일(야간) ~ T+2일(09:00 이전) : 결제명세서 통보(예탁결제원)
- ④ T+2일 : 결제처리(예탁결제원)
 - ① (증권결제) 증권인도(매도자→KSD), 증권수령(KSD→매수자)

② (대금결제) 대금납부(매수자→KSD) 및 대금지급(KSD→매도자)



< 해외 > (※ 미국 시장의 사례)

① T일 : 매매주문 및 매매체결

① (매매주문) 매매주문(국내증권사→현지증권사→미국거래소)

② (매매체결) 매매주문 체결(NYSE 등 미국거래소) 및 체결내역 통보(미국거래소→현지증권사·DTCC*, 현지증권사→국내증권사)

* The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 미국예탁결제기관

② T+1일 : 결제지시 접수(국내증권사→KSD) 및 전송(KSD→외국보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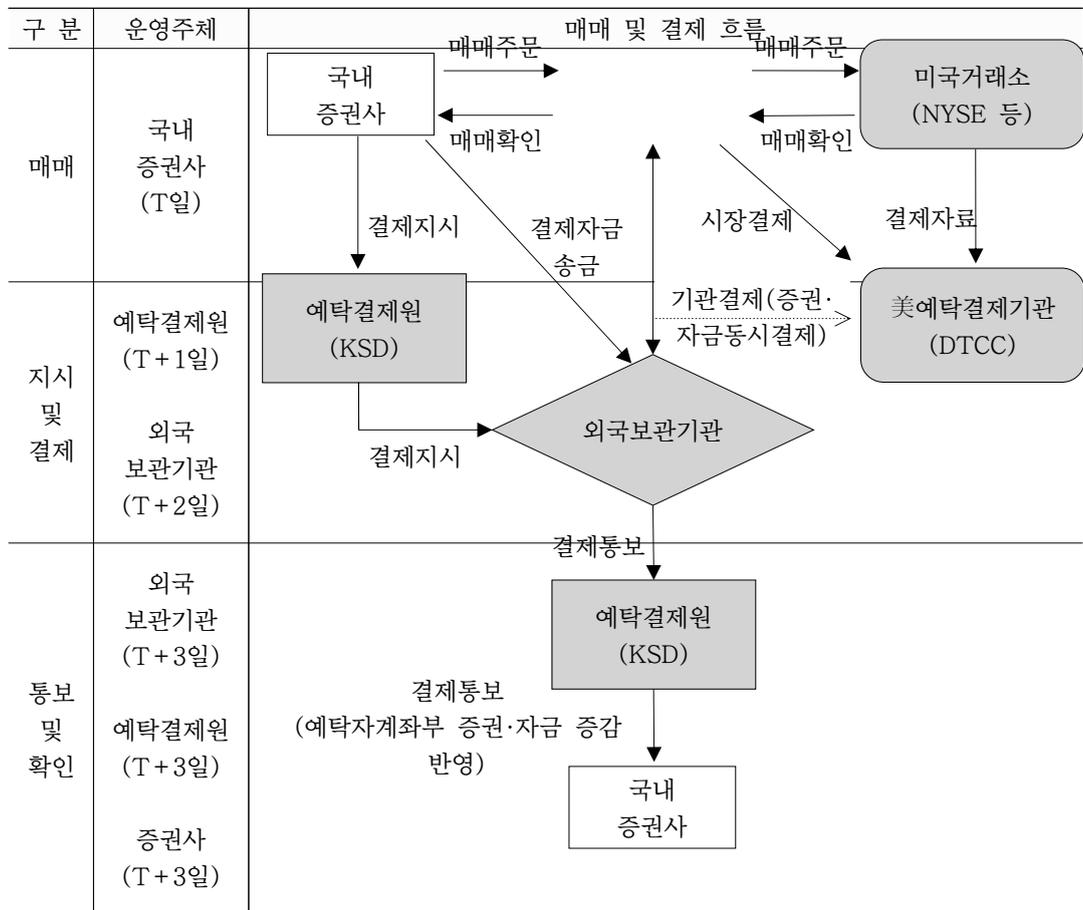
* 현재 미국의 경우 외국보관기관은 씨티은행(Citibank, N.A.)

③ T+2일 : 현지시장 결제처리(외국보관기관)

○ 기관결제(현지증권사↔외국보관기관) 및 시장결제(현지증권사→DTCC)

④ T+3일 : 결제처리 내역 통보(외국보관기관→KSD→증권사)

○ 현지 T+2일 결제이나, 시차상 국내에서 T+3일(새벽~이른 오후)에 결제 결과를 확인 가능하여 국내시점 결제처리는 T+3일 소요



별첨 2 - 증권예탁제도 발전과정

1. 1970년대 이전, 증권의 실물유통

- 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을 매매하는 당사자 간에는 실물증권을 양수도하거나 발행회사가 관리하는 장부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거래
 - 증권 거래규모와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의 분실, 결제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paper crisis")
 - 이에,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면서 대량의 거래를 실현시키고자하는 수요도 증가

2. 1970년대 이후, 증권예탁제도 등장

- 대량거래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 실물증권을 중앙기관에 예탁하고, 증권의 이전을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간 대체기재(book-entry transfer)의 방법으로 결제
 - 예탁결제제도의 도입으로 증권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며, 대량의 거래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유동성도 증가

3. 20세기 후반, 전자증권제도 도입

- 증권예탁제도의 발전으로 증권매매에 따른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따라,
 -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무권화"), 전자등록기관에 권리를 등록하여 증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가 이루어짐

구분	전자증권제도	증권예탁제도
도입 목적	증권의 무권화(無券化)를 통한 발행 및 유통 원활화	증권의 부동화(不動化)를 통한 유통 원활화
법적 기반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국내 상장주식 등	해외주식·국내 비상장주식 등
권리 형태	전자등록(완전 무권화) - 실물증권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	실물증권(불완전 무권화) - 예탁증권의 경우 언제든지 실물 반환 요청 가능
계좌부기재 효력	적법 권리 보유 추정 (전자증권법 §35①)	점유 간주 (자본시장법 §311①)
권리 양도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양도 효력 발생, 전자증권법 §35②)	계좌 간 대체기재 (교부 간주, 자본시장법 §311②)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

- 금융위원회, 2021. 10

1. 제도개선 관련 추진경과

- ◆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 심사절차 중단 가능
 - * 형사소송, 금융위·금감원·공정위·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중단·보류 가능
- 소송·조사·검사결과에 따른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 ◆ 다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중단사유 발생시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되고,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어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
 - '19.6월 발표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금투업자의 심사중단제도 개선안도 포함되었으나, 그간 개선사항 未적용*
 - * 심사중단 사유별 세밀하고 정치한 기준 부족 등의 문제 상존

- ◆ 이에 따라,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마련·발표('21.5.6.)
 - 금융당국 실무진들이 심사중단·재개 여부 검토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 등을 규정한 「제도운영 실무지침(안)」 마련('21.6.9. 금융위 보고)
 - 동 지침(안)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내부기준으로, 심사중단·재개 여부는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의 재량판단 하에 결정
 - 한편, 구속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중('21.9월~)

II.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
- ◆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여부를 검토하여,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1.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 구체화 (「제도개선 실무지침」)

※ 금융위원회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

- ◆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원칙 명시
 - 해당 중단사유가 인허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단사유 발생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
- ◆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단계별로 예시적으로 열거
 - 가령, 형사절차는 수사진행 상황,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중단 여부 판단 가능
 -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중단 가능
 - 행정절차의 경우,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중단 가능
- ◆ 심사중단 장기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결정 이후의 상황변화 및 진행경과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
 - 가령, 심사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사재개 결정 가능
 - * (예) 강제수사 후 1년 경과해도 未기소, 검사착수 후 6월 경과해도 제재절차 未착수

2. 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업권별 규정개정)

- ◆ 심사가 중단된 件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재개여부 결정
 - 다만, 검토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검토 요청시 금융위는 재개여부 검토 필요



-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여부 판단

III. 업권별 규정개정 내용 및 진행현황

- ◆ 제도개선 의 후속조치로, 금융위에 주기적 심사재개여부 검토의무를 부여하는 규정개정 추진 중
 - 개정사항에는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 및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 규정개정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은 금년 9월~10월 중 개정완료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21.9.30. 시행 / 그 외 4개 감독규정 : '21.10.14. 시행
 -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법령(자본시장법, 보험업법)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 추진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1.9.3.-10.13. → (시행) '21.12.9.
 -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21.9.9.-10.19. → (시행) '22.2.18.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정비 예정
- ◆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하여 업권간 형평성 제고 도모